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3차 변경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3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082
----------	------

제출연월일 : 2010. 6.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 제안이유

- 어린이들의 과학적 사고능력 배양 및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계양구 방축동 108-1번지의 15필지에 건립하는 전문 어린이과학관 건물 취득 1건,
- 내·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 및 종합복지 증진 도모를 위하여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에 건립중인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물 취득 1건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1.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m²/ 천원)

구분	위 치	면 적	m ² 당 사업비	기준가격	비 고
건물	계양구 방축동 108-1외 15필지	14,998 (지하1,지상3층)	3,865	57,975,400	아동 청소년과

※ 기준가격 :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

2.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m²/ 천원)

구분	위 치	면 적	m ² 당 사업비(원)	기준가격	비 고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6 (남동공단 내)	28,007.51 (지하2,지상11층)	1,410,943	39,517,000	기업 지원과

※ 기준가격 :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

참고자료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관계법령 발췌사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총괄표	4
■ 재산의 목록(취득)	5
■ 재산의 목록(처분)	9
■ 관련자료		
①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22
②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	27
■ 관계법령	33

■ 총괄표

취득

(단위:m², 천원)

구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당초		1,600	2,024,635.40	342,601,292	
	변경					
	증감					
건물	당초	46		607,049.19	1,292,550,194	
	변경	48		650,054.70	1,390,042,594	
	증감	2		43,005.51	97,492,400	
기타	당초	1			18,000,000	
	변경					
	증감					

처분

(단위:m², 천원)

구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당초		228	408,288.06	412,765,496	
	변경					
	증감					
건물	당초	39		144,277.95	44,646,715	
	변경					
	증감					
기타	당초					
	변경					
	증감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m², 천원)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2,674,690.10	1,750,643,886			
2010-1	토지	부평구 부평동	663	대	105,987.00	11,570.00	10,413,000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사회복지 봉사과장	당초
2010-2	토지	서구 경서동	82	전	2,731.00	2,731.00	497,042	노인마을형 실 버농장 조성	노인정책 과장	"
	"	"	83	전	4,215.00	4,215.00	767,130	"	"	"
2010-3	토지	부평구 부평동	663	대	105,987.00	9,917.40	8,925,660	영유아보육 종합 지원센터 건립	여성정책 과장	"
2010-4	건물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 기장 부지내			12,000.00	33,670,000	빙상경기장 건립	체육진흥 과장	"
2010-5	건물	중구 신흥동3가	69-3외 1필지			13,200.00	6,000,000	공동물류센터 건 립	항만공항 정책과장	"
2010-6	토지	서구 심곡동	120외 419필지		717,645.00	592,091.00	86,316,535	서구 종합경기 장 건립	아시아경기 대회 지원 본부장	"
	건물	서구 연희동	387외 419필지			175,700.00	345,660,000	"	"	"
	토지	계양구 서운동	95-5외 202필지		434,469.00	381,826.00	39,229,253	계양경기장 건립	"	"
	건물	"	111외 202필지			19,000.00	85,751,447	"(배드민턴)	"	"
	"	"	"			1,100.00	4,964,553	"(양궁)	"	"
	토지	남동구 만수동	776-1외 321필지		354,849.00	307,082.00	53,969,535	남동경기장 건립	"	"
	건물	남동구 수산동	409-1외 321필지			2,500.00	8,000,000	"(럭비)	"	"
	"	"	"			29,700.00	95,026,000	"(농구)	"	"
	건물	남구 문학동	482			14,300.00	34,356,000	문학수영장(수영)	"	"
	토지	서구 가좌동	447-1외 215필지		186,763.00	160,089.00	35,530,068	십정경기장 건립	"	"
	건물	서구 십정동	101-2외 215필지			19,400.00	55,797,800	"(스쿼시)	"	"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6	건물	서구 십정동	101-2외 215필지			1,700.00	4,889,200	십정경기장 (테니스)	아시아경기 대회 지원 본부장	당 초
	토지	강화군 국화리	31-3외 99필지		105,221.00	80,268.00	5,401,951	강화경기장 건립	"	"
	건물	"	46-4외 99필지			16,500.00	38,724,300	" (태권도,우슈)	"	"
	"	"	"			1,100.00	2,581,700	" (BMX)	"	"
	건물	동구 송림동	11	대		24,800.00	54,546,000	송림경기장 건립	"	"
	토지	연수구 선학동	68-8외 331필지		500,271.70	451,878.00	100,739,895	선학경기장 건립	"	"
	건물	"	82외 331필지			12,700.00	73,995,000	"	"	"
2010-7	토지	서구 심곡동	213	대	594.00	594.00	292,248	인천지방소방학 교 건립	소방행정 과장	"
	"	"	212	전	853.00	853.00	105,772	"	"	"
	"	"	산47	임	21,521.00	21,521.00	413,203	"	"	"
	건물	"	213-1외 3필지			5,874.00	7,480,000	" (본관동)	"	"
	"	"	"			2,310.00	2,130,000	" (구조훈련장)	"	"
	"	"	"			3,135.00	2,850,000	"(육내종합훈련 센터)	"	"
2010-8	항공 기						18,000,000	소방헬리콥터 구입	"	"
2010-9	건물	연수구 송도동	12-1			6,582.31	16,941,516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	"			3,652.04	8,091,913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	"
	"	"	"			250.91	817,247	인천대학교 박물관	"	"
	"	"	"			2,526.64	8,945,287	인천대학교 정보전산원	"	"
	"	"	"			16,920.81	31,482,014	인천대학교 자연대학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9	건물	연수구 송도동	12-1			14,219.54	22,775,099	인천대학교 도서관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	"			10,452.93	18,104,536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	"	"
	"	"	"			25,651.30	46,648,320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	"
	"	"	"			11,531.53	22,787,955	인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	"
	"	"	"			6,303.42	10,732,295	인천대학교 사회/법과대학	"	"
	"	"	"			9,393.49	14,739,975	인천대학교 인문대학/어학 원	"	"
	"	"	"			7,205.87	12,331,069	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 /경영대학	"	"
	"	"	"			5,524.03	12,115,345	인천대학교 컨벤션센터	"	"
	"	"	"			6,207.46	10,239,917	인천대학교 예체능대학/부 설연구소	"	"
	"	"	"			8,105.57	14,448,682	인천대학교 복지회관	"	"
	"	"	"			4,824.52	9,345,921	인천대학교 학생복지회관	"	"
	"	"	"			6,678.13	22,139,576	인천대학교 강당 및 공연장	"	"
	"	"	"			1,712.20	3,144,352	인천대학교 시민대학	"	"
	"	"	"			3,469.81	6,736,705	인천대학교 체육관	"	"
	"	"	"			6,102.97	13,448,821	인천대학교 스포츠센터/골프장	"	"
	"	"	"			17,441.54	33,332,037	인천대학교 기숙사	"	"
	"	"	"			2,387.82	5,054,644	인천대학교 게스트하우스	"	"
	"	"	"			194.60	299,832	인천대학교 청람지휴계소	"	"
	"	"	"			1,222.91	2,291,022	인천대학교 학군단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9	건물	연수구 송도동	12-1			945.57.00	2,306,966	인천대학교 어린이집	인천대학 교총장	1차 변경
	"	"	"			99.37.00	206,746	인천대학교 온실	"	"
	"	"	"			215.14.00	353,727	인천대학교 운동장본부석	"	"
	"	"	"			464.61.00	1,866,327	인천대학교 전망타워	"	"
	"	"	"			35,800.82	33,410,348	인천대학교 지하주차장	"	"
2010-10	건물	중구 운서동	1632외 16필지			7,934.82	11,473,000	밀라노디자인시 티·트리엔날레 관 기부채납	경제청장 (용유무의 개발과장)	"
2010-11	건물	계양구 방축동	108-1외 15필지			14,998.00	57,975,400	어린이과학관 건립	아동청소 년과장	3차 변경
2010-12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6			28,007.51	39,517,000	인천종합비즈니스 센터건립	기업지원 과장	"
					이	하	빈	칸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m², 천원)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552,566.01	457,412,211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26-3	전	46.00	46.00	23,230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원 담당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26-7	대	132.00	132.00	75,240	"	"	"
	"	남구 도화동	26-8	대	228.00	228.00	129,960	"	"	"
	"	남구 도화동	26-15	대	83.00	83.00	47,310	"	"	"
	"	남구 도화동	26-21	전	238.87	238.87	108,924	"	"	"
	"	남구 도화동	26-22	잡종 지	268.00	268.00	137,484	"	"	"
	"	남구 도화동	26-24	잡종 지	136.00	136.00	69,768	"	"	"
	"	남구 도화동	26-25	전	79.00	79.00	36,024	"	"	"
	"	남구 도화동	26-26	대	149.00	149.00	84,930	"	"	"
	"	남구 도화동	26-27	대	235.00	235.00	133,950	"	"	"
	"	남구 도화동	26-28	전	734.00	734.00	334,704	"	"	"
	"	남구 도화동	26-31	전	83.00	83.00	37,848	"	"	"
	"	남구 도화동	26-32	전	198.00	198.00	90,288	"	"	"
	"	남구 도화동	26-33	전	585.00	585.00	266,760	"	"	"
	"	남구 도화동	26-34	전	129.00	129.00	58,824	"	"	"
	"	남구 도화동	26-35	전	129.00	129.00	58,824	"	"	"
	"	남구 도화동	26-36	전	317.00	317.00	144,552	"	"	"
	"	남구 도화동	26-37	전	1,447.05	1,447.05	659,855	"	"	"
	"	남구 도화동	26-42	대	159.00	159.00	90,630	"	"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26-43	대	195.00	195.00	111,150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 원담당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26-51	대	370.00	370.00	210,900	"	"	"
	"	남구 도화동	26-53	잡종 지	188.00	188.00	96,444	"	"	"
	"	남구 도화동	26-54	대	350.00	350.00	199,500	"	"	"
	"	남구 도화동	26-55	잡종 지	254.00	254.00	130,302	"	"	"
	"	남구 도화동	26-56	잡종 지	208.00	208.00	106,704	"	"	"
	"	남구 도화동	26-60	잡종 지	149.00	149.00	76,437	"	"	"
	"	남구 도화동	26-62	대	69.00	69.00	39,330	"	"	"
	"	남구 도화동	26-68	대	40.00	40.00	22,800	"	"	"
	"	남구 도화동	26-69	대	232.00	232.00	132,240	"	"	"
	"	남구 도화동	26-70	대	76.00	76.00	43,320	"	"	"
	"	남구 도화동	26-71	전	131.00	131.00	59,736	"	"	"
	"	남구 도화동	26-73	잡종 지	24.00	24.00	12,312	"	"	"
	"	남구 도화동	26-74	전	121.00	121.00	55,176	"	"	"
	"	남구 도화동	26-75	잡종 지	52.00	52.00	26,676	"	"	"
	"	남구 도화동	26-76	전	73.00	73.00	33,288	"	"	"
	"	남구 도화동	26-78	전	290.00	290.00	132,240	"	"	"
	"	남구 도화동	27-5	잡종 지	135.00	135.00	69,255	"	"	"
	"	남구 도화동	32-1	대	112.00	112.00	63,840	"	"	"
	"	남구 도화동	33-6	대	40.40	40.40	24,159	"	"	"
	"	남구 도화동	33-8	대	62.50	62.50	35,625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33-10	대	107.30	107.30	61,161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 원담당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33-11	대	97.50	97.50	55,575	"	"	"
	"	남구 도화동	33-12	대	120.50	120.50	68,685	"	"	"
	"	남구 도화동	33-14	대	60.00	60.00	34,200	"	"	"
	"	남구 도화동	33-15	대	184.20	184.20	104,994	"	"	"
	"	남구 도화동	33-16	대	77.70	77.70	44,289	"	"	"
	"	남구 도화동	33-18	대	97.10	97.10	55,347	"	"	"
	"	남구 도화동	33-19	대	105.20	105.20	59,964	"	"	"
	"	남구 도화동	33-20	대	152.80	152.80	87,096	"	"	"
	"	남구 도화동	33-21	대	325.10	325.10	185,307	"	"	"
	"	남구 도화동	33-22	대	149.60	149.60	85,272	"	"	"
	"	남구 도화동	33-23	대	307.90	307.90	175,503	"	"	"
	"	남구 도화동	33-25	대	179.80	179.80	102,486	"	"	"
	"	남구 도화동	33-26	대	795.10	795.10	453,207	"	"	"
	"	남구 도화동	33-28	대	843.10	843.10	480,567	"	"	"
	"	남구 도화동	33-29	대	97.20	97.20	55,404	"	"	"
	"	남구 도화동	33-32	대	74.30	74.30	42,351	"	"	"
	"	남구 도화동	33-33	대	143.60	143.60	81,852	"	"	"
	"	남구 도화동	33-34	대	94.30	94.30	53,751	"	"	"
	"	남구 도화동	35-1	대	148.60	148.60	84,702	"	"	"
	"	남구 도화동	35-2	대	60.30	60.30	34,371	"	"	"
	"	남구 도화동	36-1	학교 용지	965.00	965.00	993,95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37-6	대	58.30	58.30	25,361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 기 업 민 원 담 당 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43-17	학교 용지	313.30	313.30	105,269	"	"	"
	"	남구 도화동	44-1	대	92.30	92.30	120,918	"	"	"
	"	남구 도화동	44-11	대	6.30	6.30	8,316	"	"	"
	"	남구 도화동	45-1	대	879.30	879.30	1,151,883	"	"	"
	"	남구 도화동	45-9	대	290.00	290.00	385,700	"	"	"
	"	남구 도화동	45-13	대	35.50	35.50	45,440	"	"	"
	"	남구 도화동	45-33	대	76.20	76.20	86,106	"	"	"
	"	남구 도화동	45-35	대	5.80	5.80	7,482	"	"	"
	"	남구 도화동	45-38	대	54.70	54.70	66,187	"	"	"
	"	남구 도화동	47-15	대	75.00	75.00	128,250	"	"	"
	"	남구 도화동	113-36	대	19.36	19.36	24,201	"	"	"
	"	남구 도화동	117-2	대	83.00	83.00	37,765	"	"	"
	"	남구 도화동	117-7	대	136.00	136.00	61,880	"	"	"
	"	남구 도화동	118-10	대	89.00	89.00	40,495	"	"	"
	"	남구 도화동	118-33	대	33.00	33.00	15,015	"	"	"
	"	남구 도화동	118-39	대	1.98	1.98	902	"	"	"
	"	남구 도화동	118-40	대	40.00	40.00	18,200	"	"	"
	"	남구 도화동	118-42	대	11.00	11.00	5,005	"	"	"
	"	남구 도화동	118-43	대	9.00	9.00	4,095	"	"	"
	"	남구 도화동	135-1	대	10.00	10.00	4,350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135-6	대	10.00	10.00	4,350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 원담당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135-11	대	53.00	53.00	23,055	"	"	"
	"	남구 도화동	135-15	대	36.00	36.00	15,660	"	"	"
	"	남구 도화동	138-4	대	9.00	9.00	3,978	"	"	"
	"	남구 도화동	138-8	대	761.00	761.00	336,362	"	"	"
	"	남구 도화동	138-27	대	11.00	11.00	4,862	"	"	"
	"	남구 도화동	138-34	대	1.00	1.00	442	"	"	"
	"	남구 도화동	138-35	대	29.00	29.00	12,818	"	"	"
	"	남구 도화동	138-36	대	10.00	10.00	4,420	"	"	"
	"	남구 도화동	138-38	대	2.00	2.00	884	"	"	"
2010-2	토지	남구 도화동	35-8	학	692.20	536.90	553,007	도시개발공사 양여	인천대학교 총장	"
	"	남구 도화동	35-9	학	963.60	963.60	992,508	"	"	"
	"	남구 도화동	36-2	학	679.90	679.90	700,297	"	"	"
	"	남구 도화동	36-3	학	666.90	666.90	686,907	"	"	"
	"	남구 도화동	36-4	학	1,797.20	1,797.20	1,851,116	"	"	"
	"	남구 도화동	36-5	학	2,190.70	2,130.00	2,193,900	"	"	"
	"	남구 도화동	36-6	학	115.40	115.40	118,862	"	"	"
	"	남구 도화동	36-9	학	1,204.60	22.10	22,763	"	"	"
	"	남구 도화동	38-3	학	86,681.00	73,265.20	75,463,156	"	"	"
	"	남구 도화동	42-1	학	1,919.20	1,919.20	1,957,584	"	"	"
	"	남구 도화동	43-1	학	417.30	417.30	425,646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토지	남구 도화동	43-3	학	1,567.80	1,567.80	1,599,156	도시개발공사 양여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43-4	학	589.00	589.00	600,780	"	"	"
	"	남구 도화동	43-5	학	89.10	89.10	90,882	"	"	"
	"	남구 도화동	43-6	학	3,622.20	3,622.20	3,694,644	"	"	"
	"	남구 도화동	43-7	학	114,602.50	32,105.30	32,747,406	"	"	"
	"	남구 도화동	43-11	학	943.30	943.30	962,166	"	"	"
	"	남구 도화동	43-12	학	1,176.30	1,176.30	1,199,826	"	"	"
	"	남구 도화동	43-13	학	159.10	159.10	162,282	"	"	"
	"	남구 도화동	43-14	학	420.20	109.20	111,384	"	"	"
	"	남구 도화동	43-16	학	133.50	133.50	136,170	"	"	"
	"	남구 도화동	43-18	학	211.40	211.40	215,628	"	"	"
	"	남구 도화동	43-19	학	270.40	270.40	275,808	"	"	"
	"	남구 도화동	43-20	학	4,059.00	1,946.00	1,984,920	"	"	"
	"	남구 도화동	43-22	학	3,267.50	1,961.40	2,000,628	"	"	"
	"	남구 도화동	43-23	학	1,079.60	996.30	1,016,226	"	"	"
	"	남구 도화동	49-2	학	420.00	420.00	428,400	"	"	"
	"	남구 도화동	49-3	학	1,125.90	1,125.90	1,148,418	"	"	"
	"	남구 도화동	49-4	학	5,118.20	5,118.20	5,220,564	"	"	"
	"	남구 도화동	49-5	학	514.70	514.70	524,994	"	"	"
	"	남구 도화동	49-6	학	280.20	280.20	285,804	"	"	"
	"	남구 도화동	49-7	학	1,866.10	1,866.10	1,903,422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토지	남구 도화동	49-8	학	1,078.00	1,078.00	1,099,560	도시개발공사 양여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64-1	학	2,420.50	2,420.50	2,294,634	"	"	"
	"	남구 도화동	112-19	학	4,422.00	4,422.00	4,192,056	"	"	"
	"	남구 도화동	112-51	대	192.00	87.00	38,976	"	"	"
	"	남구 도화동	112-104	학	2,856.00	2,856.00	2,707,488	"	"	"
	"	남구 도화동	143-1	학	24.00	23.00	7,797	"	"	"
	"	남구 도화동	143-7	학	612.00	612.00	630,360	"	"	"
	"	남구 도화동	144-10	학	136.00	136.00	140,080	"	"	"
	"	남구 도화동	156-2	학	3,332.00	2,690.00	3,093,500	"	"	"
	"	남구 도화동	168-1	학	3,634.00	3,634.00	3,743,020	"	"	"
	"	남구 도화동	171	학	8,046.00	8,046.00	8,287,380	"	"	"
	"	남구 도화동	174-1	학	1,001.00	1,001.00	1,031,030	"	"	"
	"	남구 도화동	174-2	학	324.00	324.00	333,720	"	"	"
	"	남구 도화동	174-5	학	2,830.00	2,830.00	2,914,900	"	"	"
	"	남구 도화동	177-28	학	23.00	23.00	23,690	"	"	"
	"	남구 도화동	177-62	학	238.00	238.00	245,140	"	"	"
	"	남구 도화동	180-25	학	99.00	99.00	101,970	"	"	"
	"	남구 도화동	182-6	학	11.00	11.00	11,330	"	"	"
	"	남구 도화동	182-11	학	3,306.00	50.00	51,500	"	"	"
	"	남구 도화동	182-14	학	393.00	208.00	214,240	"	"	"
	"	남구 도화동	183-2	학	304.00	304.00	313,12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토지	남구 도화동	189	학	337.00	337.00	347,110	도시개발공사 양여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190	학	1,054.00	1,054.00	1,085,620	"	"	"
	"	남구 도화동	191-1	학	5,368.00	5,368.00	5,529,040	"	"	"
	"	남구 도화동	191-2	학	658.00	658.00	677,740	"	"	"
	"	남구 도화동	191-4	학	142.00	142.00	146,260	"	"	"
	"	남구 도화동	192	학	178.00	178.00	183,340	"	"	"
	"	남구 도화동	193	학	10,962.00	10,962.00	11,290,860	"	"	"
	"	남구 도화동	193-2	학	2,552.00	2,552.00	2,628,560	"	"	"
	"	남구 도화동	193-3	학	56.00	56.00	57,680	"	"	"
	"	남구 도화동	193-4	학	20.00	20.00	20,600	"	"	"
	"	남구 도화동	193-5	학	2,469.00	1,737.00	1,789,110	"	"	"
	"	남구 도화동	193-6	학	72,821.00	9,860.80	10,156,624	"	"	"
	"	남구 도화동	194	학	602.00	602.00	620,060	"	"	"
	"	남구 도화동	195-1	학	522.00	522.00	537,660	"	"	"
	"	남구 도화동	195-2	학	608.00	608.00	626,240	"	"	"
	"	남구 도화동	196-1	학	1,200.00	1,200.00	1,236,000	"	"	"
	"	남구 도화동	196-2	학	19,671.00	18,841.00	19,406,230	"	"	"
	"	남구 도화동	197-1	학	324.00	324.00	333,720	"	"	"
	"	남구 도화동	197-2	학	79.00	79.00	81,370	"	"	"
	"	남구 도화동	198-1	학	225.00	225.00	231,750	"	"	"
	"	남구 도화동	198-2	학	60.00	60.00	61,800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토지	남구도화동	199	학	344.00	344.00	354,320	도시개발공사양여	인천대학교총장	1차변경
	"	남구도화동	200	학	136.00	136.00	140,080	"	"	"
	"	남구도화동	201	학	826.00	826.00	850,780	"	"	"
	"	남구도화동	203-3	학	37.00	37.00	38,110	"	"	"
	"	남구도화동	206-1	학	135,162.00	37,640.00	38,769,200	"	"	"
	"	남구도화동	265	학	957.20	957.20	321,619	"	"	"
	"	남구도화동	산28-4	임	198.00	198.00	187,704	"	"	"
	"	남구도화동	산28-5	임	397.00	397.00	376,356	"	"	"
	"	남구도화동	산28-6	임	99.00	99.00	101,970	"	"	"
	"	남구도화동	산31-4	전	126.00	126.00	129,780	"	"	"
	건물	남구도화동	26-65외 6필지			14,317.98	3,402,228	" (종합실습실)	"	"
	"	남구도화동	36-1외 3필지			25,517.40	7,469,114	" (본관)	"	"
	"	남구도화동	38-3외 1필지			8,308.56	2,524,020	" (학생회관)	"	"
	"	남구도화동	산24-2			51.43	1,234	" (본관화장실)	"	"
	"	남구도화동	26-65외 1필지			117.99	29,498	" (공대식당)	"	"
	"	남구도화동	산31-23 외1필지			111.28	23,591	" (사위장)	"	"
	"	남구도화동	43-7외 8필지			1,189.74	423,942	" (학군단)	"	"
	"	남구도화동	38-3			14,125.64	4,259,164	" (대학원관)	"	"
	"	남구도화동	174-1외 12필지			2,832.25	1,047,217	" (제2공학관)	"	"
	"	남구도화동	174-1외 12필지			1,028.80	401,906	" (UTM실)	"	"
	"	남구도화동	38-3			1,088.40	333,656	" (학생회관써클실)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건물	남구 도화동	36-8			188.64	6,602	도시개발공사 양여(실습실)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837			475.75	37,411	" (운동부합숙소)	"	"
	"	남구 도화동	43-7			14,533.37	6,024,572	" (실험강의동)	"	"
	"	남구 도화동	31-6			691.20	232,819	" (학생복지시설)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206.55	30,983	" (골프연습장)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100.00	15,000	" (기자재실)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761.25	145,915	" (학생회관별동)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650.00	242,970	" (ΠC사무실)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676.00	269,724	" (공동기기실습실)	"	"
	"	남구 도화동	31-6외 195			5,396.60	2,510,272	" (동북아학부생활관)	"	"
	"	남구 도화동	31-6			8,254.82	4,143,061	" (학산도서관)	"	"
	"	남구 도화동	38-3			396.00	212,652	" (제2학생복지동)	"	"
	"	남구 도화동	112-19 외2			1,485.80	683,471	" (창업보육센터)	"	"
	"	남구 도화동	38-3			252.15	132,379	" (노천극장)	"	"
	"	남구 도화동	260-1			148.50	77,963	" (기계과실습동)	"	"
2010-3	토지	남구 도화동	23-11	잡	2,181.0	669.0	329,817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총장	2차 변경
	"	남구 도화동	23-14	학	6,622.0	6,622.0	6,820,660	"	"	"
	"	남구 도화동	23-15	학	1.0	1.0	1,030	"	"	"
	"	남구 도화동	26-10	학	109.0	109.0	112,270	"	"	"
	"	남구 도화동	26-11	학	1,190.0	1,044.3	1,075,629	"	"	"
	"	남구 도화동	26-13	대	833.0	593.0	610,79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3	토지	남구 도화동	26-16	전	294.0	74.0	33,744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총장	2차 변경
	"	남구 도화동	26-29	전	694.0	69.0	34,017	"	"	"
	"	남구 도화동	26-30	전	1,091.0	1,041.0	1,072,230	"	"	"
	"	남구 도화동	26-41	구거	469.0	119.0	22,372	"	"	"
	"	남구 도화동	26-59	전	221.0	15.0	6,840	"	"	"
	"	남구 도화동	26-65	학	10,185.0	10,185.0	10,490	"	"	"
	"	남구 도화동	26-66	전	172.0	92.0	46,460	"	"	"
	"	남구 도화동	26-67	전	565.0	255.0	128,775	"	"	"
	"	남구 도화동	26-80	구거	461.0	101.0	18,988	"	"	"
	"	남구 도화동	26-81	전	149.0	14.0	6,384	"	"	"
	"	남구 도화동	26-82	학	866.0	863.0	888,890	"	"	"
	"	남구 도화동	26-83	학	652.0	652.0	671,560	"	"	"
	"	남구 도화동	31-6	학	1,219.7	1,194.3	1,089,201	"	"	"
	"	남구 도화동	31-7	학	126.9	126.9	76,393	"	"	"
	"	남구 도화동	33-1	학	160.5	160.5	140,437	"	"	"
	"	남구 도화동	33-2	학	201.2	201.2	166,794	"	"	"
	"	남구 도화동	33-4	대	156.9	107.1	101,530	"	"	"
	"	남구 도화동	33-5	대	148.3	67.7	49,759	"	"	"
	"	남구 도화동	33-7	대	1,396.8	6.8	3,876	"	"	"
	"	남구 도화동	35-3	대	277.2	108.0	61,560	"	"	"
	"	남구 도화동	35-4	대	149.2	43.0	24,51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3	토지	남구 도화동	35-5	학	5,310.8	5,276.7	5,435,001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총장	2차 변경
	"	남구 도화동	35-6	학	166.7	166.7	171,701	"	"	"
	"	남구 도화동	35-8	학	692.2	155.3	159,959	"	"	"
	"	남구 도화동	38-3	학	86,681.0	13,415.8	13,818,274	"	"	"
	"	남구 도화동	38-5	학	74.0	74.0	76,220	"	"	"
	"	남구 도화동	38-14	학	31.0	31.0	31,930	"	"	"
	"	남구 도화동	38-16	학	3.0	3.0	3,090	"	"	"
	"	남구 도화동	38-17	학	44.0	44.0	45,320	"	"	"
	"	남구 도화동	38-18	학	134.0	134.0	138,020	"	"	"
	"	남구 도화동	38-20	학	142.0	142.0	146,260	"	"	"
	"	남구 도화동	39-19	학	70.0	70.0	72,100	"	"	"
	"	남구 도화동	43-7	학	114,602.5	57,403.7	58,551,774	"	"	"
	"	남구 도화동	43-8	학	852.2	852.2	869,244	"	"	"
	"	남구 도화동	43-9	학	535.0	535.0	545,700	"	"	"
	"	남구 도화동	43-20	학	4,059.0	2,113.0	2,155,260	"	"	"
	"	남구 도화동	43-21	학	1,623.9	1,623.9	1,656,378	"	"	"
	"	남구 도화동	43-22	학	3,267.5	1,166.0	1,189,320	"	"	"
	"	남구 도화동	43-23	학	1,079.2	80.0	81,600	"	"	"
	"	남구 도화동	43-24	학	9,529.1	9,529.1	9,719,682	"	"	"
	"	남구 도화동	43-25	학	370.9	370.9	378,318	"	"	"
	"	남구 도화동	43-26	학	998.9	998.9	1,018,878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 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3	토지	남구 도화동	182-11	학	3,306.0	3,256.0	3,353,680	인천새마을자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총장	2차 변경
	"	남구 도화동	182-14	학	393.0	185.0	190,550	"	"	"
	건물	남구 도화동	43-7			7.77.91	2,668,697	" (인문사회학부관)	"	"
	"	남구 도화동	26-25외 4필지			8,157.23	1,835,357	" (종합실습관)	"	"
	"	남구 도화동	35-5			151.69	42,473	" (종합실습관식당)	"	"
	"	남구 도화동	38-3외 1필지			39.6	950	" (화장실)	"	"
	"	남구 도화동	38-3			44.8	1,075	" (변전실)	"	"
	"	남구 도화동	43-7		49,852	24,926	4,924,655	" (체육관)	"	"
	"	남구 도화동	43-7			49.64	1,191	" (체육관화장실)	"	"
	"	남구 도화동	43-7			71.6	1,718	" (체육관화장실)	"	"
	"	남구 도화동	43-7			170.04	47,611	" (체육관식당)	"	"
	"	남구 도화동	43-7			59.62	1,430	" (체육관화장실)	"	"
	"	남구 도화동	43-6			26.60	638	" (체육관변전실)	"	"
	"	남구 도화동	43-7			397.44	54,449	" (학생회관)	"	"
	"	남구 도화동	43-24외 2필지			199.68	83,266	" (골프연습장)	"	"
2010-4	토지	서구 심곡동	280			4,195.40	7,383,904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교통기획 과장	"
					이	하	빈	칸		

①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

- 국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과학관을 세계적인 명품 과학관으로 건립하여 어린이의 꿈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장 마련

I. 취득개요

(단위 : m², 천원)

구분	위 치	면 적	m ² 당 사업비	기준가격	비고
건물	계양구 방축동 108-1외 15필지	14,998 (지하1,지상3층)	3,865	57,975,400	

- ※ 기준가격 : 건축비 등 시설비
 - 공사비 및 설계비 : 55,977,900천원
 - 감리비 : 1,847,500천원
 - 시설부대비 : 150,000천원

II. 건립의 필요성

- 인천은 U—City조성 등 IT강국과 과학 정보교육의 선진화와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나, 2009년12월말 현재 47만명에 달하는 우리시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문화 시설이 없어 타시도의 과학관을 찾는 실정으로,
- 우리시 어린이들의 자긍심 고취와 어린이들이 과학적 사고능력 배양을 통하여 꿈과 창의력을 키움으로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특성화된 전문 어린이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임.

Ⅲ. 그동안 추진 현황

- '03. 6월 : 어린이 과학회관 건립계획 수립
- '04. 7월 : 건립부지 선정(계양구 방축동 108-1외 15필지)
- '04. 9월 :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완료
- '05. 9월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토지 취득) 승인
- '07. 5월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완료(적정)
- '07. 8월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턴키방식)
- '08. 1월 : 어린이과학관 건립 세부추진 변경계획 수립
- '08. 4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및 고시(국토해양부)
- '08. 9월 :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결정(지형지적 고시)
- '08. 10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계양구 고시 2008-57호)
- '08. 12월 : 사업시행자 선정(조달청) - 동부건설컨소시엄
- '09. 3월 : 토지보상 완료
- '09. 4월 : 건축허가
- '09. 4월 : 실시설계 완료
- '09. 5월 : 기공식
- '09. 6월 : 본공사 계약 및 착공
- '10. 4.월(현재) - 내부 마감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공정율 약33%)

Ⅳ. 주요시설 배치계획(안)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옥 탑 층	옥외공연장 및 휴게시설	4,287.39	연면적 제외
지상 3층	3군, 4군, 5-2군 전시장	2,875.17	
지상 2층	1군, 2군, 5-1군 전시장, 4D영상관	2,843.36	
지상 1층	중앙홀, 기획전시실, 어린이도서관, 강당, 카페테리아	3,856.73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수장실	5,422.80	
계	주차대수 : 147대	14,998.06	

V. 연도별 투자 내역 등 사업비 현황

○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77,487	10,000	20,000	15,000	32,487		
공종별	시설비	74,837	9,950	19,470	13,665	31,752	
	감리비	2,500	-	500	1,300	700	
	부대비	150	50	30	35	35	

○ 재원별 사업비 내역

- 지방비 43,537백만원 / 지방채 33,950백만원

VI. 향후 추진계획

- 2010. 06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
- 2010. 09 : 관리운영조례 제정 및 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1. 04 : 공사 준공
- 2011. 05 : 과학관 개관

※ 참고자료

- 첨부 1 : 위치도
- 첨부 2 : 조감도 및 내부투시도

【첨부1】

【위치도】



내 용	사업 위치도
-----	--------

【첨부2】

【조감도 및 실내 투시도】



내 용	조감도
-----	-----



내 용	투시도
-----	-----

②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

-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기관 공동입주로 기업애로사항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 남동산업단지 내 부족한 근로자문화센터 및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로 취약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 및 종합복지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 취득개요

(단위 : m², 천원)

구분	위 치	면 적	m ² 당 사업비(원)	기준가격	비고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6 (남동산단 내)	28,007.51 (지하2,지상11층)	1,410,943	39,517,000	

※ 기준가격 : 건축비 등 시설비

- 공 사 비 : 37,544,000천원
- 설 계 비 : 477,000천원
- 감 리 비 : 1,413,000천원
- 시설부대비 : 83,000천원

II. 건립의 필요성

- 한국의 대표적 산업도시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분산되어 있음에 따른 기업체가 겪고 있는 자금, 기술, 판로, 정보 등 모든 분야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며
- 중소기업의 취약점인 수출 무역 등 국제화와 관련하여 국제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 및 서비스제공이 어려워 국제 경쟁력 강화가 힘들고

-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문화센터 및 어린이 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불안하고 또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시설 설치가 전무한 상태이며
-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전문지식, 휴식, 취미활동, 및 정보취득 활동 공간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종합복지 증진·지역공동체의 숙원사업 해결

Ⅲ. 그동안 추진 현황

- 2005. 03. 02 : 건립계획(안) 수립
- 2005. 12. 29 :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06. 05. 16 : 중앙재정투·용자심사 승인
- 2007. 09. 06 : 기본설계
- 2008. 02. 12 : 건축허가
- 2008. 03. 07 : 실시설계
- 2008. 05. 19 : 공사입찰 공고
- 2008. 08. 20 : 공사계약
- 2008. 08. 25 : 착 공
- 2008. 12. 21 : 기초파일 공사
- 2009. 03. 28 : 좌측 지하2층 부분 두부정리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
- 2009. 04. 10 : 기초 매트 철근배근, 가시설공사, 토사반출 등
- 2009. 05. 27 : 지하 1층 슬라브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 2009. 06. 26 ~ 2009. 09. 13 : 지상 1 ~ 5층 골조 공사 등
- 2009. 09. 14 ~ 2009. 11. 23 : 6층 ~ 8층 골조공사 등
- 2009. 12. 02 : 9층 ~ 10층 골조 및 기계설비 공사
- 2009. 12. 31 : 11층 구조체 콘크리트 타설 완료
- 2010. 03. 02 : 층별 조적 및 설비, 전기, 소방, 통신공사
- 2010. 04. 02 ~ 2010. 05. 30 : 조경 및 층별 내부공사

※ 공사 공정율 : 94%(2010.06.01)

IV. 주요시설 배치계획(안)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옥 탑 층	계단실, 공조실, ELEV,기계실	323.78	연면적에서 제외
지상11층	근린생활, 일반음식점	1,575.33	
지상10층	일반업무시설, 지원기관	1,564.15	
지상 9층	일반업무시설, 지원기관	1,552.40	
지상 8층	일반업무시설, 지원기관	1,476.25	
지상 7층	일반업무시설, 정보자료실 유관단체사무실, 회의실,	1,386.42	
지상 6층	일반업무, 회의실	985.90	
지상 5층	일반업무시설, 강당, 휴게실, 상담실, 회의실	2,129.41	
지상 4층	일반업무시설, 강당, 사무실, 근로자복지센터	1,939.86	
지상 3층	일반업무시설 헬스, 문화, 에어로빅	2,252.87	
지상 2층	일반업무시설, 중소기업전시장	2,229.42	
지상 1층	유아보육시설, 중소기업제품전시장	1,919.95	
지하 1층	주차장	4,387.70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	4,614.85	
계	주차대수 : 228대	28,007.51	

V. 연도별 투자 내역 등 사업비 현황

○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39,517	1,303	5,414	2,000	12,800	18,000		
공종별	시설비	38,021	1,303	5,200	1,290	12,600	17,628	
	감리비	1,413		202	700	200	311	
	부대비	83		12	10		61	

○ 재원별 사업비 내역

- 국비 4,000백만원, 시비 35,517백만원

VI. 향후 추진계획

- 2010. 06 :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 2010. 06 : 공사 준공 예정

※ 참고자료

- 첨부 1 : 위치도
- 첨부 2 : 조감도

[첨부1]

【위치도】



[첨부2]

【조감도】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⑤ “생략”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